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t Public Library: Focused o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임진택 (Jin Taek Lim)**
김양우 (Yang-woo Kim)***

초 록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에 제정되었고, 동년 9월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3년이 지난 현재에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개인정보의 수집과 도용・유출・판매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데 제도적인 제한점이나 문제점은 없는가를 조사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해결방안은 다음과 관련된다: ①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 ②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의 강화; ③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공도서관의 공통된 세부 지침의 마련 등이다.

ABSTR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first enacted in March, 2011, amended in September, 2011 and became effective. Nevertheless, the risk of interfering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till remains, associated with collection, plagiarism, leakage, and even sales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ublic libraries are not an exception. According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public libraries of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lso, it tries to discover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act and presents a model scheme to improve this situation. The scheme relates to ① securing of a sufficient budget; ② reinforcing professional educ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③ developing detailed guidelines for public libraries.

키워드: 공공도서관,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public library,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mputation managers

---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축약한 것임.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kultuk@naver.com) (제1저자)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조교수(ykim@hansung.ac.kr) (공동저자,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 2015년 2월 24일 ■ 최초심사일자 : 2015년 2월 25일 ■ 게재확정일자 : 2015년 3월 16일
■ 정보관리학회지, 32(1), 85-108, 2015.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1.085〕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업과 개인은 정보의 대량 생산 및 유통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게 되었으며 세계의 각 국가와 정부는 전산 처리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자국민과 관련된 수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수많은 정보들이 경제적 가치로 인식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악의적으로 이용되고, 침해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3년 8월 공공시립도서관 사서보조 공익근무요원이 도서관 회원 2만여 명의 인적사항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전달받은 사람은 인적사항 중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뒤 신규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사이버머니를 받아서 이를 불법으로 거래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이건명, 2005)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2011년 3월에 제정하였고, 동년 9월부터 발효되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3년이 지난 현재에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개인정보의 수집과 분석・도용・유출・판매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도서관 담당직원의 여러 업무 중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도서관 내부 직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외부 해킹에 의한 피해 등 비록 '개인정보' 관련법은 강화되었지만 도서관 현장 담당자의 인식부족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안일한 대처는 경우에 따라서 수많은 '개인정보' 피해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보유기간・파기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지만, 실제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어 제도적인 제한점은 없는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는데 방해되는 공공도서관의 문제점은 없는지 조사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

적 접근방법과 설문지를 통한 실증적 접근방법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문헌조사를 위하여 2014년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조사하였고, 운영주체별로 구분하여 '개인정보 수집근거', '개인정보 수집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지를 통한 조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의 307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전산담당자를 대상으로 2014년 4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 대상인 전산담당자는 307개 공공도서관에 각각 한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 S구는 6개의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를 한명의 전산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었고, 경기도 P시는 11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담당자는 1명이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 대상인 전산담당자는 총 115명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에 104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주관적 기술내용은 설문대상자 중 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개인정보의 개념과 개인정보보호법

2.1.1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이제희(2009)는『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정보(個人情報)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이라 함은 특정될 수 있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으며, 해당정보의 주체가 특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어떤 정보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특정한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단체에 속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집단이고 특정기간에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적시됨으로써 해당 개인이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4).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은 국가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그 정의가 매우 유사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외국의 경우 OECD 이사회가 채택한 1980년『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가간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권고』(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data, annex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23rd September 1980 OECD.Pt.1.cl.(1)(b))에서는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any information relating to identified or identifiable individual)"라고 정의하고 있다. EU의 1995년『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에서는 개인정보를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정보, 즉 신체적・정신적・심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특성의 요소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식별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외국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모든 정보'이며 '사망자에 대한 정보가 아닌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이며 '해당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1.2 공공도서관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도서관에서 이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만 한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거나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서류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도서관 담당 직원은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자료 열람이나 대출, 반납과 같은 업무에 이용하고 있다. 반납의 기일이 지나 연체되거나, 이용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경우 대출되었던 장서를 분실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해당 도서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는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다. 회원 탈퇴 업무와 관련된 법조항은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이 해당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업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법조항들은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이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고지 및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각 조항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즉,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관련 법조항들

은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다.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중에 지갑 등을 분실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CCTV 카메라의 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제35조). 그러나 CCTV 카메라의 정보가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 등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에 대한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제35조4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방법과 절차에 맞게 요구할 수 있다(제38조1항). 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가 권리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제38조4항). 현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개인정보처리자'는 권리행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내용을 기술하여 게시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실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9조1항).

2.2 선행연구

노영희(2012)는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연구』에서 미국의 ALA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국내 국립중앙도서관과 관종별 한 기관씩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여 국내 도서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안하였다. 즉 도서관 업무영역 중 대출기록, 온라인탐색서비스, 상호대차 및 원문서비스, 참고서비스, 소셜서비스, 도서관컴퓨터와 데이터관리 등 각 영역에 개인정보지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법, 그리고 도서관법을 중심으로 관종별 도서관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한 반면,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중점을 두어 공공도서관의 업무에 한정하여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 연구(노영희, 2012)의 결론부에서도 필요성으로 제기된 것이다.

김송수(2011)는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에서 도서 대출 기록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하여 강조하고, 관련 「도서관법」 제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개정을 제안하였는데,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항인 "①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②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④ 도서관이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은 이용자의 민감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⑥ 도서관은 이용자의 민감정보에 대한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보유목적을 달성하거나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도서관법 8조 3항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불충분한 것으로써, 도서관장이 필요성을 판단하지 못한 사항에도 개인정보보호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김송수, 2011)에서 추가로 제시된 3개항은 모두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된 내용으로서 본 연구는 그와 같은 법안을 토대로 공공도서관 환경에 한정하여 이행정도를 분석하고 추가적인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연구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의 연구들로서, 관련법 제정이후 새로운 환경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박상근(2009)은『공공도서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강화 방안 연구』에서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유 및 파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안하였다.

신영진(2008)은『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호보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추진현황을 비교하여 개인정보호보 수준 향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준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김기성(2006)은『대학도서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외 도서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도서관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분석하여 대학도서관에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무와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학도서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하여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관리', '도서관 자원 및 시설 사용기록', '웹 서비스', '컴퓨터의 사용', '제3자 보안', '역감시 및 실천대책', '관리제도' 등의 7개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건명(2005)은『공공도서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에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율이 낮은 정보보호 상위집단과 높은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사용자별 고유 ID 보유, 시스템 부정접근 방지 규정, 비인가자의 취급/저장 절차 규정, 정보보호시설 운용담당 관리자 지정 등으로 제시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공공도서관의 공동 협력을 통해 지역전산운영센터를 운영하여 전산업무를 통합하거나 정보보호 업무를 위탁관리 형태로 전환한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화하여 유출위험을 최소화한다. 셋째, 운영하는 프로그램 보안패치 및 서비스팩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및 계정을 즉시 삭제하여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위 연구들의 제안사항도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상당부분 반영된 바, 본 연구는 법 제정이후의 환경에서 추가 제안점을 제시하였음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다.

박윤민(2003)은『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황의 운영주체별 비교분석 및 기초정책적 제언에 관한 연구』에서 강원도 36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① 운영주체의 이원화, ② 지역간 법정 기준 도달율의 격차, ③ 사서직원의 부족, ④ 운영예산의 부족이라고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① 운영주체의 일원화, ② 법정 기준의 상향조정에 따른 지역간 격차 해소, ③ 사서직원의 확충, ④ 정보(자료)의 질의 변화, ⑤ 운영예산의 균형적인 지원 등 도서관 정책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선 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는 운영주체 2원화에 따

른 행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도서관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운영주체를 달리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영희(2012)에 의하면 외국도서관의 경우에 시애틀공공도서관은 'The Seattle Public Library Website: Privacy Notice'라는 명칭으로 도서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을 알리고 있다. 먼저 정책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시애틀공공도서관은 시애틀공공도서관에 정보를 요구한 사람과 자료를 대출한 사람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은 웹사이트 및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개인이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와 수집되는 내용, 쿠키, 어린이들의 프라이버시, 이용자가 도서관에 기대하는 것과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기대하는 것, 제3자에 대한 것, 외부 사이트, 그리고 보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라큐스대학교 도서관(Syracuse University Library)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ALA의 윤리 선언에 기초한다고 선언하고, 개인정보의 의미를 '이름, 숫자, 기호, 표시 또는 다른 식별기호 때문에 자연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어떤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정책의 용어정의 부분에서는 개인정보, 대학정보, 인증서비스, 도서관웹사이트, 비즈니스 거래(Business Transaction) 등에 대해 정의되어 있다. 이 정책은 'New York State Law'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며, 뉴욕주립법에서 도서관과 관련 있는 부분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지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① 도서관웹사이트 브라우징, ② 참고서비스, ③ 전통목록, ④ 대출, ⑤ 상호대차, ⑥ 온라인 자원, ⑦ 도서관연구이니셔티브, ⑧ 비즈니스 거래, 그리고 ⑨ 보안 등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 및 경기소재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현황은 어떠한가?

나. 서울 및 경기소재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별 혹은 개인정보취급자별 특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는 어떠한가?

다. 서울 및 경기소재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수행 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요인은 무엇인가?

3.2 설문지 작성

본연구의 설문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문항 수는 24문항이며 첫 번째 부분은 9개 문항 인구 통계학적 내용으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 근무경력, 도서관 유형, 장서규모, 직원 현황, 설립 주체, 개인정보 관련 교육 유무,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 등을 제시하였다.

〈표 1〉 설문지 구성 및 내용

설문 구성	설문 내용과 문항 수	
일반사항	성별, 연령, 도서관 근무경력, 개인정보 취급 업무기간, 개인정보 업무관련 교육 경험 유무, 교육 유형, 도서관 운영 주체, 도서관 규모-장서수량, 도서관 규모-직원 수 등(9개 문항)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항	개인정보 보호부문(4개 문항)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이행여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이행여부
		개인정보 보안프로그램 이행여부
		개인정보 DB 암호화 이행여부
	개인정보 수집부문(4개 문항)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고지이행여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여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안내여부
		개인정보 유출 대응절차 수립여부
	개인정보 관리부문(4개 문항)	CCTV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여부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여부
		저장매체 파기계획 수립여부
개인정보보호이행정도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 평가(1개 문항)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시 문제점	주관적 기술(1개 문항)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	주관적 기술(1개 문항)	

두 번째 부분은 총 12개 문항으로 '개인정보보호부문', '개인정보 수집부문', '개인정보 관리부문'으로 구성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3개 문항으로 '개인정보보호 이행정도 부문'으로 기술하여 도서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서관 실정에 맞추어 이행하는데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3.3 설문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 중 관련 설문에 응답을 하지 않은 응답자는 통계처리에서 제외시켰으며 여기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Reliability)이란 유사한 측정도구 혹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된 개념의 조작화에 사용된 항목들이 실제로 가설검증을 위한 자료로 유의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들 항목들이 해당 개념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되며 과정은 변수의 신뢰성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측정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서울 및 경기소재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행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서울 및 경기소재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정도 차이검증을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3.1 설문의 신뢰도 검증

설문항목이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알파(Alpha)계수가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대부분 0.6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설문항목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 참조).

〈표 2〉 설문 문항의 신뢰도 검증

	Alpha
개인정보 보호	.778
개인정보 수집	.728
개인정보 관리	.797

3.4 인터뷰 실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설문문항의 객관식 문항은 응답자의 응답을 근거로 통계처리된 자료를 분석하였고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기술한 설문 항목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에 대하여 응답자 중 8명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추가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14년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설문의 인구 통계학적 일반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이 64.4%, 여성이 35.6%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경우에는 30대, 40대가 89.4%로 전체 연령의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었다. 도서관에 근무한 경력을 살펴보면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전체의 62.5%로서 5년 미만(37.5%)의 근무자보다 전산 근무 경력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 취급업무 관련 교육의 경우에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교육을 받았으며, 개인적으로 세미나 등을 참가하여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과, 회사에서 주최하는 전산교육, 또는 외부 위탁 교육업체의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 등이 있었다.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이 83개소,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21개소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무하는 도서관의 규모면에서 살펴보면 장서수량이 50,000권 이상의 도서관이 전체 응답자의 86.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사서 직원 수에서도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N=104)

구 분			응답자 수	퍼센트
성별	남		67	64.4
	여		37	35.6
연령	20대		3	2.9
	30대		43	41.3
	40대		50	48.1
	50대 이상		8	7.7
도서관 근무경력	2년 미만		19	18.3
	2년 이상~5년 미만		20	19.2
	5년 이상~10년 미만		32	30.8
	10년 이상		33	31.7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	6개월 미만		14	13.5
	6개월 이상~1년 미만		30	28.8
	1년 이상~3년 미만		26	25.0
	3년 이상		34	32.7
개인정보 취급 업무 관련 교육 경험	있다		104	100.0
교육 받은 내용 *응답자만 처리	개인 교육 참여		32	29.4
	전체 교육	사내 전산 교육	33	32.4
		외부 위탁 교육	39	38.2
	소계		104	100.0
근무 도서관의 운영 주체	지자체		83	79.8
	교육청		21	20.2
근무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	30,000권 이상~50,000권 미만		14	13.5
	50,000권 이상		90	86.5
근무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	5명 미만		2	1.9
	5명 이상~10명 미만		17	16.3
	10명 이상~15명 미만		37	35.6
	15명 이상		48	46.2
합계			104	100.0

10명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81.8%로서 10명 미만(18.2%)보다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작성하면 〈표 3〉과 같다.

4.2 개인정보 보호 부문

개인정보 보호 부문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경우에는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98.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방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100.0%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실시에 대한 기타에 응답한 경우는 2명으로서 질문에 대한 무응답을 나타내고 있다(〈표 4〉 참조).

〈표 4〉 개인정보보호부문

설 문 내 용		빈도	퍼센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이행	102	98.1
	무응답	2	1.9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방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이행	104	100.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기 업데이트	이행	104	100.0
합계		104	100.0

4.3 개인정보 수집 부문

개인정보 수집 부문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음의 경우에는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102명(98.1%)로 대부분의 도서관은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2명(1.9%)으로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 장서 수량이나 사서직원이 적을 뿐 아니라 '전산담당자'가 상주하지 않고 데이터만 전산작업으로 관리하는 규모가 작은 공공도서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표 5〉 참조).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대부분의 도서관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대체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의 95.2%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무응답인 응답자(4.8%)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대체수단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96.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해당 없다는 응답이 1.9%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운영주체별로 비교해 보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모두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인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미이행'과 '해당없음'이라고 각각 2명씩 응답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근무경력이 2년, 개인정보 취급 업무기간이 1년 미만인 담당자들이 이와 같이 응답하였

〈표 5〉 개인정보 수집 부문

설 문 내 용		빈도	퍼센트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음	이행	102	98.1
	미이행	2	1.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홈페이지 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대체수단을 도입하고 있음	이행	99	95.2
	무응답	5	4.8
합계		104	100.0

〈표 6〉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절차 안내 여부

구 분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합계	
도서관 근무경력	2년 미만	17	(89.5)	2	(10.5)	0	(.0)	19	(100.0)
	2년 이상~5년 미만	20	(90.9)	0	(.0)	2	(9.1)	22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32	(100.0)	0	(.0)	0	(.0)	32	(100.0)
	10년 이상	31	(100.0)	0	(.0)	0	(.0)	31	(100.0)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	6개월 미만	12	(85.7)	0	(.0)	2	(14.3)	14	(100.0)
	6개월 이상~1년 미만	28	(93.3)	2	(6.7)	0	(.0)	30	(100.0)
	1년 이상~3년 미만	26	(100.0)	0	(.0)	0	(.0)	26	(100.0)
	3년 이상	34	(100.0)	0	(.0)	0	(.0)	34	(100.0)
근무 도서관의 설립 주체	지자체	79	(95.2)	2	(2.4)	2	(2.4)	83	(100.0)
	교육청	21	(100.0)	0	(.0)	0	(.0)	21	(100.0)
근무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	30,000권 이상~50,000권 미만	12	(75.0)	2	(12.5)	2	(12.5)	16	(100.0)
	50,000권 이상	88	(100.0)	0	(.0)	0	(.0)	88	(100.0)
근무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	5명 미만	0	(.0)	0	(.0)	2	(100.0)	2	(100.0)
	5명 이상~10명 미만	17	(89.5)	2	(10.5)	0	(.0)	19	(100.0)
	10명 이상~15명 미만	37	(100.0)	0	(.0)	0	(.0)	37	(100.0)
	15명 이상	46	(95.8)	0	(.0)	0	(.0)	48	(100.0)
합계		100	(96.2)	2	(1.9)	2	(1.9)	104	(100.0)

다. 위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도서관 규모가 크고 개인정보 취급 업무기간이 길고 사서 직원 수가 많은 도서관의 경우 대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대응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77.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2.1%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도서관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2년 미만은 이행이 89.5%, 2-5년 미만은 90.9%, 5-10년 미만은 100%, 10년 이상은 100%로 도서관 근무경력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에 따라서는 6개월 미만은 이행이 85.7%, 6개월-1년 미만은 93.3%, 1-3년 미만은 100%, 3년 이상은 100%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기간이 1년 이상인 집단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근무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에 따라서는 30,000권~50,000권 미만인 집단은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75.0%로 50,000권 이상인 집단의 100%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근무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에 따라서는 5-10명 미만은 89.5%, 10-15명 미만은 100%, 15명 이상은 95.8%로 사서 직원 수가 10명 이상인 집단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하고 있지만 수립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도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7〉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대응절차 수립 여부

구 분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대응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합계	
		이행		미 이행		빈도	%
		빈도	행 %	빈도	행 %		
도서관 근무경력	2년 미만	14	(73.7)	5	(26.3)	19	(100.0)
	2년 이상~5년 미만	15	(75.0)	5	(25.0)	20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18	(75.0)	6	(25.0)	24	(100.0)
	10년 이상	34	(82.9)	7	(17.1)	41	(100.0)
개인정보 취급 업무기간	6개월 미만	12	(100.0)	0	(.0)	12	(100.0)
	6개월 이상~1년 미만	13	(65.0)	7	(35.0)	20	(100.0)
	1년 이상~3년 미만	27	(71.1)	11	(28.9)	38	(100.0)
	3년 이상	29	(85.3)	5	(14.7)	34	(100.0)
근무하는 도서관의 설립 주체	지자체	59	(77.6)	17	(22.4)	76	(100.0)
	교육청	22	(78.6)	6	(21.4)	28	(100.0)
근무하는 도서관의 규모(장서 수량)	30,000권 이상~50,000권 미만	12	(100.0)	0	(.0)	12	(100.0)
	50,000권 이상	69	(75.0)	23	(25.0)	92	(100.0)
근무하는 도서관의 규모(사서 직원수)	5명 이상~10명 미만	17	(100.0)	0	(.0)	17	(100.0)
	10명 이상~15명 미만	29	(65.9)	15	(34.1)	44	(100.0)
	15명 이상	35	(81.4)	8	(18.6)	43	(100.0)
합계		81	(77.9)	23	(22.1)	104	(100.0)

4.4 개인정보 관리 부문

개인정보의 저장매체에 대한 파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89.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10.6%로 나타났다(〈표 8〉 참조). 도서관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2년 미만은 이행이 42.1%, 2-5년 미만은 100.0%, 5-10년 미만은 100.0%, 10년 이상은 100.0%로 도서관 근무경력이 2년 미만인 집단보다 2년 이상인 집단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에 따라서는 6개월 미만은 이행이 21.4%, 6개월-1년 미만은 100.0%, 1-3년 미만은 100.0%, 3년 이상은 100.0%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집단보다 6개월 이상인 집단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근무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에 따라서는 50,000권 이상인 집단은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100.0%로 30,000권~50,000권 미만인 집단의 21.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근무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에 따라서는 5명 미만은 이행이 100.0%, 5-10명 미만은 35.3%, 10-15명 미만은 100.0%, 15명 이상은 100.0%로 사서 직원 수가 5-10명 미만 집단보다 5명 미만, 10명 이상인 집단이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개인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파기에 대하여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100%인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파기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도서관 규모가 큰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보다

〈표 8〉 개인정보의 저장매체에 대한 파기계획 수립 여부

구 분		이행		미이행		합계	
도서관 근무경력	2년 미만	8	(42.1)	11	(57.9)	19	(100.0)
	2년 이상~5년 미만	20	(100.0)	0	(.0)	20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32	(100.0)	0	(.0)	32	(100.0)
	10년 이상	33	(100.0)	0	(.0)	33	(100.0)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	6개월 미만	3	(21.4)	11	(78.6)	14	(100.0)
	6개월 이상~1년 미만	30	(100.0)	0	(.0)	30	(100.0)
	1년 이상~3년 미만	26	(100.0)	0	(.0)	26	(100.0)
	3년 이상	34	(100.0)	0	(.0)	34	(100.0)
근무 도서관의 설립 주체	지자체	72	(86.7)	11	(13.3)	83	(100.0)
	교육청	21	(100.0)	0	(.0)	21	(100.0)
근무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	30,000권 이상~50,000권 미만	3	(21.4)	11	(78.6)	14	(100.0)
	50,000권 이상	90	(100.0)	0	(.0)	90	(100.0)
근무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	5명 미만	2	(100.0)	0	(.0)	2	(100.0)
	5명 이상~10명 미만	6	(35.3)	11	(64.7)	17	(100.0)
	10명 이상~15명 미만	37	(100.0)	0	(.0)	37	(100.0)
	15명 이상	48	(100.0)	0	(.0)	48	(100.0)
합계		93	(89.4)	11	(10.6)	104	(100.0)

이행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5 개인정보보호 이행 정도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도서관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2년 미만이 3.32점, 2-5년 미만이 3.80점, 5-10년 미만이 4.19점, 10년 이상이 4.27점으로 도서관 근무경력이 길수록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도서관 근무경력이 2년 미만인 집단보다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인 집단이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행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9〉 참조).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에 따라서는 6개월 미만이 3.14점, 6개월-1년 미만이 3.97점, 1-3년 미만이 4.23점, 3년 이상이 4.15점으로 대체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이 길수록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집단보다 6개월-1년 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인 집단이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근무하는 도서관의 설립 주체에 따라서는 지자체가 3.88점, 교육청이 4.38점으로 근무 도서관의 설립 주체가 지자체인 집단보다 교육청인 집단이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p<.01$).

근무하는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에 따라서는 30,000권~50,000권 미만이 3.14점, 50,000권 이상이 4.11점으로 장서 수량이 30,000권~50,000권 미만인 집단보다 50,000권 이상인 집단이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가 더 높게

〈표 9〉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 차이 검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도서관 근무경력	2년 미만a	19	3.32	.671	12.705***	.000	bcd>a
	2년 이상~5년 미만b	20	3.80	.523			
	5년 이상~10년 미만c	32	4.19	.535			
	10년 이상d	33	4.27	.626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	6개월 미만a	14	3.14	.363	11.624***	.000	bcd>a
	6개월 이상~1년 미만b	30	3.97	.718			
	1년 이상~3년 미만c	26	4.23	.765			
	3년 이상d	34	4.15	.359			
근무 도서관의 설립 주체	지자체	83	3.88	.632	9.825**	.002	
	교육청	21	4.38	.740			
근무 도서관 규모-장서 수량	30,000권 이상~50,000권 미만	14	3.14	.363	31.652***	.000	
	50,000권 이상	90	4.11	.626			
근무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	5명 미만a	2	4.00	.000	2.722*	.048	d>b
	5명 이상~10명 미만b	17	3.59	.939			
	10명 이상~15명 미만c	37	3.97	.645			
	15명 이상d	48	4.13	.570			

* p < .05, ** p < .01, *** p < .001

나타났다(p<.001).

근무하는 도서관 규모-사서 직원 수에 따라서는 5명 미만이 4.00점, 5-10명 미만이 3.59점, 10-15명 미만이 3.97점, 15명 이상이 4.13점으로 사서 직원 수가 15명 미만인 집단보다 15명 이상인 집단이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사서 직원 수가 5-10명 미만인 집단보다 15명 이상인 집단이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수행 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인력부족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유식별번호 변경이 가져오는 호환성의 문제가 24.4%, 주민번호에서 일련번호로 바뀌면서 데이터가 섞일 경우 연체자 관리가 어렵다는 응답이 12.2%, 세부 업무 영역, 법적 사항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없다는 응답이 9.8% 등의 순으로 '고유식별번호 변경이 가져오는 호환성의 문제' 또는 '인력부족이 문제'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표 10〉 참조). 이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관련 법규나 절차에 대한 이해와 숙지의 부족으로 개인정보 수집 시 유출 가능성에 대한 고객의 거부감,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측면도 업무수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응답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정기적, 지속적인 교육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부 지침 개정 필요가 17.4%,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이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0〉「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수행 시 문제점

번호	문 제 점	빈도	퍼센트
1	인력부족	15	36.6
2	고유식별번호 변경이 가져오는 호환성의 문제	10	24.4
3	주민번호에서 일련번호로 바뀌면서 데이터가 섞일 경우 연체자 관리가 어려움	5	12.2
4	세부 업무 영역, 법적 사항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음	4	9.8
5	직원의 실수로 인한 유출문제	4	9.8
6	개인정보 수집 시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거부감을 설득하기 어려움	1	2.4
7	개인정보의 전체적인 관련법규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숙지가 부족함	1	2.4
8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했는데 추후 요청했던 정보주체의 항의로 곤란을 겪음	1	2.4
합계		41	100.0

* 응답자만 처리

〈표 11〉「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요인

개 선 점	빈도	퍼센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정기적, 지속적 교육 필요	31	21.7
세부 지침 개정 필요	8	17.4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 인력 확충	5	10.9
벌칙이 강화되어 개인정보 보안 및 중요성에 대해 강조	1	2.2
자주 발생되는 문제점 위주로의 예방정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1	2.2
합계	46	100.0

* 응답자만 처리

4.6 인터뷰 내용 분석

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안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 중 8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응답하여 제시된 내용은 4가지였으며, 대표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전체 응답자 중 7명이 응답하였다. '직원회의를 이용한 주1회 「개인정보보호법」 숙지 교육', '월간 회의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교육', '매월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 직원 교육', '타 지역 공공도서관 연계에 의한 상호 교류'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내용의 답변이 있었지만 응답자 B씨의 답변을 소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공공기관의 자체 전산교육이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위탁교육' 등이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관리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개인정보보

호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미이수'한 직원은 교육과목을 '이수'할 때까지 수강을 반복하고, '이수' 혹은 '수료'한 직원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가로서 전문호칭 부여 혹은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하였다.

둘째, 공공도서관이 운영주체별로 업무상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각각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세부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6명이었다. '도서관 상호 교류를 통한 지침 통일', '도서관 대회를 이용한 세부 지침 제안', '세미나 개최' 등의 응답이 있었는데, 응답자 H씨는 「도서관법」 제8조에 대하여 말하였다. "「도서관법」 제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모든 도서관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및 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종별, 운영주체 등 서로 다른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조례나 규칙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보호에 적용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법규범과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도서관법」 제3항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도서관장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시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으니 문구를 확실하게 수정해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세부 지침에 대한 개선으로 응답자 K씨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적용된 도서관 업무를 하고 있지만, '회원가입'에 대한 수집 항목을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혹은 '이름', '이메일주소' 등 현재 수집하고 있는 항목 5~6가지 중에 2~3가지만을 수집하여 '회원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제시하였다.

셋째,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반영'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5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 L씨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전산 시스템 강화를 언급하였고, 백신프로그램 및 관련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응답자 A씨는 DB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필요한 예산, 인력 확충 등을 지적하였다. 응답자 C씨는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는 도서관 현실과 자치구별 도서관에 대한 예산 편성의 한계점, 지역 예산의 불균형으로 인한 예산 반영의 한계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와 경기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해당 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특별교부금' 등으로 지정하고 각 자치구에 일정부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넷째, '벌칙 강화로 개인정보 보안 및 중요성에 대해 강조'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3명이 응답하였는데 응답자 D씨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만큼 과태료 및 책임소재 등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인 담당 사서직원이나, 위탁업체 및 업체의 '개인정보취급자'까지 포함하여 강화된 '상벌규정'

을 수립하고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안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5. 논의 및 제언

5.1 개인정보 보호 부문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성별부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도서관 근무 경력은 5년 이상, 연령은 30대~40대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개인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모든 응답자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교육을 받은 유형은 '개인적 교육 참여', '회사 전산 교육', '외부 위탁 교육' 등이었다. 그러나 모든 응답자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지만, 교육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거나, 보다 '잘 이행한다'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설문 응답(〈표 9〉 참조)에서도 나타나듯이 '도서관 근무 경력'이나 '개인정보 취급 업무 기간' 등 개인 별로 그 이행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규범 속에 살고는 있지만 그 규범을 모든 사람들이 준수하지는 않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규범과 마찬가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교육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범이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담당자들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윤리 서약'과 같은 강제적 성격을 가진 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2 개인정보 수집 부문

개인정보 수집 부문을 정리하면 대부분의 도서관은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지역 G구, K구, S구 등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주민등록 번호 수집의 대체수단의 하나인 'I-Pin 인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자가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이용할 경우 기존 방법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회원임을 인증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였는데, 'I-Pin 인증시스템' 도입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체수단으로 많은 도서관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절차 안내 여부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은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절차 안내를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미이행', '해당없음'의 응답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대응절차 수립 여부에 대한 응답은 대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응답을 얻었지만, 이행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도 다수 포함되었다. 이러한 응답의 내용으로 보아 '개인정보' 수집 부문의 주민등록번호 대

체수단 도입의 경우는 빠르게 도입하여 이행하였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대응절차 수립,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절차 안내 등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도서관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등 몇 가지의 정보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었을 경우나 이러한 정보가 해킹, 관리소홀 등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이용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 안내와 '개인정보' 유출 대비 대응절차 수립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개인정보처리자'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3 개인정보 관리 부분

개인정보의 관리 부분을 정리하면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대부분의 도서관이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해당없음'이라는 응답도 있었는데, S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을 예를 들면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업무를 '개인정보처리자' 대신에 '통신담당자'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설문 결과 CCTV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시설분야로 인식하여 업무분장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해당 설문에 대하여 '해당없음'이라는 응답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 및 보관 이행 여부에 대한 응답은 '이행'보다 오히려 '미이행'이 많았다. 이와 같은 이유는 '전산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위탁업체가 전적으로 위임하여 관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청의 경우는 모든 도서관이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전체응답자 중 18명만이 자체적으로 관리 및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의 저장매체에 대한 파기계획 수립 이행 여부에 대한 응답은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이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5.4 개인정보보호 이행 정도 부문

개인정보보호 이행정도 부분을 정리하면 도서관 근무경력이 길수록 개인정보보호 이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 취급업무 기간이 길고, 장서 수량이 50,000권 이상인 집단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더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설립 주체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보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이행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보다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량이나 관련 예산 확보, 인력관련 요인 등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5.5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수행 시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업무 수행 시 문제점

에 대해 살펴보면 '인력부족'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고유식별번호로 변경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기존 데이터와의 호환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응답자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업무 중 직원의 실수로 인한 유출에 대한 문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대한 도서관 내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력부족에 대한 문제점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을 예로 들면 자치구별로 도서관 개수는 차이가 있다. 적은 곳은 한 두 개, 많은 곳은 열 개가 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개수는 많지만 그곳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원수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공공도서관의 개수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원수를 비교해보면 307개의 공공도서관을 115명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숫자상으로는 1명이 3개의 도서관을 관리하는 것이라 생각되겠지만, 실제 자치구별 도서관 개수는 상이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도서관을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 업무뿐만 아니라, 모 기관의 행정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개인정보처리자' 역시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 인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등록번호를 고유식별번호로 변경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호환성 문제이다. 도서관 업무 중에 '회원관리', '연체자 관리' 등에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유식별번호'로 변경해야 하는데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일련의 번호로 변경하고, 변경된 일련번호가 기존 데이터와 맞게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보유,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전산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인정보처리자'인 전산담당자가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전산 관련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게 일반적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실수로 인한 유출에 대한 문제점이다. 비록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공도서관 입장은 아무리 잘 관리하고 있어도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단체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뒤따르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 '내부자 소행', '위탁업체 직원의 실수' 등의 다른 이유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업무 중에 유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은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위탁 업체 직원' 들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공공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위한 내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문제점이다. 이에 대한 제언 사항은 5.6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5.6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기적,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 세부 지침 개정 필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 등, '위반 시 벌칙 강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담을 통하여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개선점을 간단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정기적, 지속적 교육면에서 사내 자체 전산교육 및 외부강사 위탁교육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센터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이수하게 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고, 이수직원에 대하여 마일리지, 인센티브 등 교육 '미이수'와 차등을 두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열의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부 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으로는 「도서관법」 제8조 1항과 3항의 규정들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도서관들은 관종별, 운영주체별로 각각 다른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잘 이행되기 위하여 각각 다른 조례나 규칙이 통일되어야 한다.

셋째,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에 대한 내용은 전산 시스템 강화, 백신프로그램 및 관련 업데이트 필요성, DB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그리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 직원 확충'을 제안하였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불균형과 도서관의 예산확보의 한계 등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지정하여 자치구별 균등 분배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넷째, '벌칙 강화로 개인정보 보안 및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면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벌칙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인 도서관 담당 사서직원과 위탁업체 및 업체의 '개인정보취급자'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강화된 '상벌규정'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6. 결 론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울 및 경기지역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입각한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 및 보관 여부 등은 관련 설문내용의 '미이행' 과 '해당없음'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설문의 추가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수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수행 시 문제점은 첫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전산담당자'가 담당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한 도서관에 '전산담당자'가 한 명이 배치되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한명의 '전산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는 도서관이 3~4군데, 10개가 넘는 도서관의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배치는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많은 도서관을 운영,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족한 인원을 확충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인력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유식별번호로 변경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호환성 문제이다. 도서관 업무 중에 '회원관리', '연체자 관리' 등에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유식별번호'로 변경해야 하는데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일련의 번호로 변경하고, 변경된 일련번호가 기존 데이터와 맞게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호환성에 대한 문제는 통상적으로 전산 관련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실수로 인한 유출에 대한 문제점이다.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고 있더라 하도라도 한 순간의 실수, 해킹, 내부자 소행, 외부 위탁직원의 실수 등으로 유출된다면 그 피해가 대단히 크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업무 중에 유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은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위탁 업체 직원'도 포함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

넷째, 공공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위한 내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문제점이다.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기관별, 운영주체별 각각 다른 도서관 내부 규정을 두어 관리 및 운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다른 규정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 조항에 공공도서관에서 실제

처리하는 업무와 적용 사례 등 공공도서관 실정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논의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더불어 시스템화를 통한 해결방안이 추가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도서관에서 훨씬 잘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기성 (2006). 대학도서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김송수 (2011).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 도서 대출 기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법행정전공.

김영석 (2013). 우리나라 16개 시・도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324-344.

김현수, 박춘식 (2003).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동향에 관한 고찰. 정보보호학회지, 13(5), 96-103.

노영희 (2012).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207-24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4.207

박상근 (2009). 공공도서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강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전공.

박윤민 (2003).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황의 운영주체별 비교분석 및 기초정책적 제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 전공.

성낙인 (1994). 행정상 개인정보보호. 공법연구, 22(3), 528-548.

신영진 (2008).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7-122.

이건명 (2005). 공공도서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이제희 (2009).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이필재 (2009). 유비쿼터스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공법전공.

조규범 (2002). 미국에서의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와 프라이버시에스크로 시스템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회 헌법학연구, 8(4), 359-389.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Cho, Kyobum (2002). A sutdy on Internet privacy protection in U.S. Constitution Research, 8(4), 359-389.

Kim, Gisung (2006). A study on academic library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Master's thesis, Choongnam University.

Kim, Hynsoo, & Park, Choonsik (2003). A study on Japanese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ituation. Journal of Information Protection Society, 13(5), 96-103.

Kim, Songsoo (2011). A study on library user privacy protec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Focused on record of checked out book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Kim, Youngseok (2013). Human resource situation analysi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324-344.

Lee, Jehee (2009). A study on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improvement. Master's thesis, Sungkyunkan University.

Lee, Kunmyoung (2005). A study on public library information protection.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Lee, Piljae (2009).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Ubiquitous era. Master's thesis, Choongbuk University.

Noh, Younghee (2012). A study on developing and proposing the library privacy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4), 207-24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4.207

Park, Sangkun (2009). A study on strengthening public library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poilcy. Master's thesis, Kyunggi University.

Park, Yoonmin (2003). A study on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wo operational system of National library and its metapolicy making in Korea. Master's thesis, Kangwon Univsersity.

Shin, Youngjin (2008). A study on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improvement in Korea. Proceedings of Korea Public Administration Society, 107-122.